

가치투자 철학을 공유합니다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투 자 신 탁 명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자 산 운 용 회 사 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 : 02) 3276-6000
판매회사명 및 상담 가능 전화 번호	<p>한국투자증권(주) (☎1599-0114, www.truefriend.com)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굿모닝신한증권 (☎1600-0119, www.goodi.com) 농협 (☎1588-2100, banking.nonghyup.com) 우리투자증권(주) (☎1544-0000, www.wooriwm.com) 유진투자증권 (☎1588-6300, www.eugenefn.com)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교보증권 (☎1544-0900, www.iprovest.com) 키움증권 (☎1544-9100, www.kiwoom.com) 신영증권 (☎1588-8588, www.shinyoung.com) 동부증권 (☎1588-4200, www.winnet.co.kr) 중소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미래에셋증권 (☎1577-9300, www.miraeasset.com) SK증권 (☎1599-8245, www.priden.com) 현대증권 (☎1588-6611, www.youfirst.co.kr)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대우증권 (☎1588-3322, www.bestez.com)</p> <p>※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 성 기 준 일	2008년 10월 21일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계 시 주 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본점 및 홈페이지(www.koreavalueasset.com)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2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5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9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2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19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20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20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I. 자산운용회사	23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II. 판매회사	27
회사 개요, 주요업무	
III. 수탁회사	29
회사 개요, 주요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30
회사 개요, 주요업무	
V. 채권평가회사	31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I. 수익자의 권리	32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34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38
---------------	----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쪽)

- 명칭 :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56287)
-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 분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추가형·개방형
- 자산운용회사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II 투자정보(본문 2~4쪽)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적극 운용하며 특히 가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 -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으므로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koreavalueasset.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8.04기준)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이채원	44세	펀드 매니저	5개	13,130억좌	- 중앙대 경영학과 - 한국증권 자산운용본부장 - 한국증권 자산운용실장 - 한국투신운용 (구동원투신운용)주식운용부
※ 이 투자신탁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 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근 1년 ('07.08.05~'08.08.04)	최근 2년 ('06.08.05~'08.08.04)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6.04.18~'08.08.04)
	투자신탁	-15.65%	23.89%	-	-	16.59%
	*비교지수	-12.80%	9.35%	-	-	4.25%
*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금리] x 0.1) *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는 “국고채 3년 지표금리+α”를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수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였음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펀드 코드: 56287)
2. 펀드 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추가형·개방형
4. 자산 운용 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6년 4월 18일 투자신탁 설정

6. 수탁고 추이

별첨 참조

7. 해지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가치투자를 통한 장기 복리수익 추구

이 투자신탁은 가치투자를 통해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하는 "가치투자 펀드"를 운용 방침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Bottom up, Low-PER, Low-PBR, High-Dividend 투자전략과 신가치투자전략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전적 가치 투자에서 신가치투자로 발전하는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므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금리] x 0.1)
- *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는 "국고채 3년 지표금리+α"를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수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였음

2. 주요투자전략

저평가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가치주에 집중 투자

- ◆ 주식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

전 략	내 용
Bottom-Up	주식시장의 변동이 아닌 기업의 절대적 내재가치에 투자
정량적&정성적 투자지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PER 투자전략 : PER(주가/수익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 - Low-PBR 투자전략 : PBR(주가/장부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 - High-Dividend 투자전략 :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 - 신가치투자 : 기업의 시장지배력, 산업의 진입장벽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한 가치 평가
안정적 투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배제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
장기투자	주가가 내재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여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

- ◆ 채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저평가된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주식에 장기투자함으로써 보유주식의 적정가치 도달시 수익을 실현하는 가치 투자 전략을 지향하는 가치형 펀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5등급^(주)중 1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및 개별종목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1등급	주식형 펀드
2등급	주식혼합형 펀드 / 인덱스, 시스템 펀드
3등급	채권혼합형 펀드
4등급	회사채 펀드
5등급	국공채 펀드

고위험



저위험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자산운용회사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자산운용회사(www.koreavalueasset.com)·판매회사(www.truefriend.com)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2008.08.04 기준)	주요경력
이채원	자산 운용부	책임 운용역	13,130억좌	-중앙대 경영학과 -한국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증권 자산운용실장 -한국투신운용 (구동원투신운용)주식운용부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평균 수익률 : 별첨 참조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별첨 참조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부담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1년 미만 : 이익금의 70% 2년 미만 : 이익금의 50% 3년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담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비고 (지급시기)
운용회사 보수	연평균가액의 0.7600%	최초 보수 지급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평균가액의 2.0400%	
수탁회사 보수	연평균가액의 0.030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평균가액의 0.0140%	
기타비용	연평균가액의 0.3232%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연평균가액의 3.1672%	-

(주)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직전회계연도 : 2007년 04월 18일 ~ 2008년 04월 17일

(주)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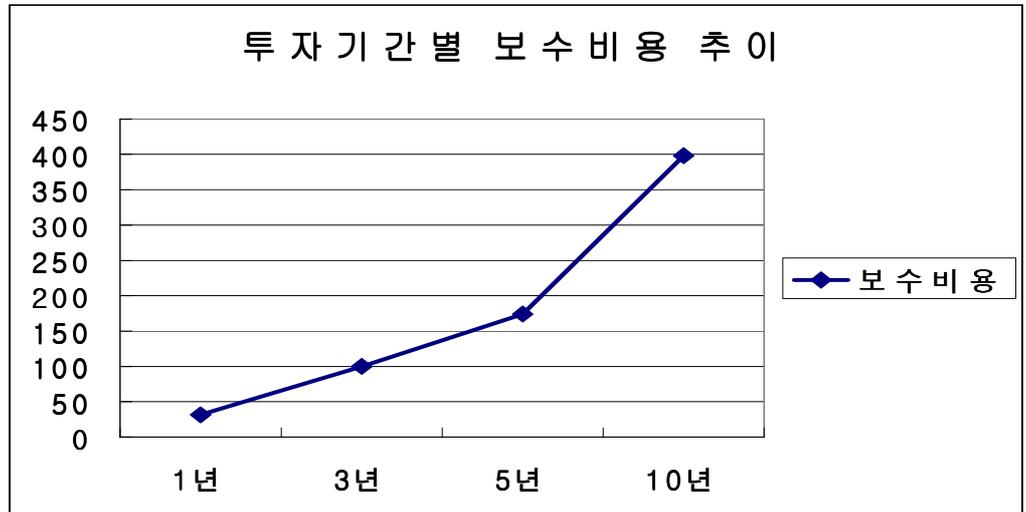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보수비용	32	100	175	398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

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6. 계약 관련 유의사항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3년째 이후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세제우대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1년 미만 : 이익금의 70% 2년 미만 : 이익금의 50% 3년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투자신탁으로 주로 저평가된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 위주의 가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하는 "가치투자 펀드"를 운용방침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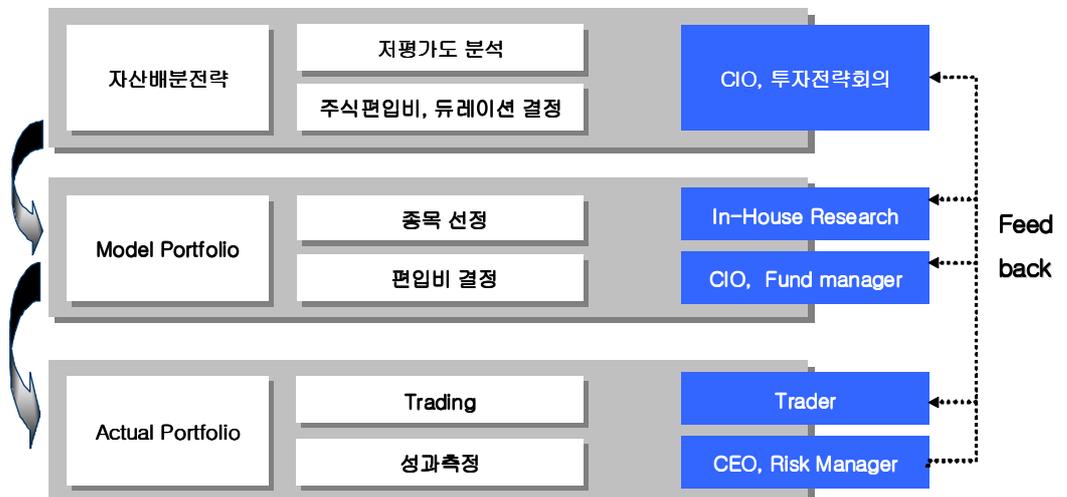
(1) 주식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

전략	내용
Bottom-Up	주식시장의 변동이 아닌 기업의 절대적 내재가치에 투자
정량적&정성적 투자지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PER 투자전략 : PER(주가/수익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 - Low-PBR 투자전략 : PBR(주가/장부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에 투자 - High-Dividend 투자전략 :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 - 신가치투자 : 기업의 시장지배력, 산업의 진입장벽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한 가치 평가
안정적 투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배제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
장기투자	주가가 내재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여 투자수익 극대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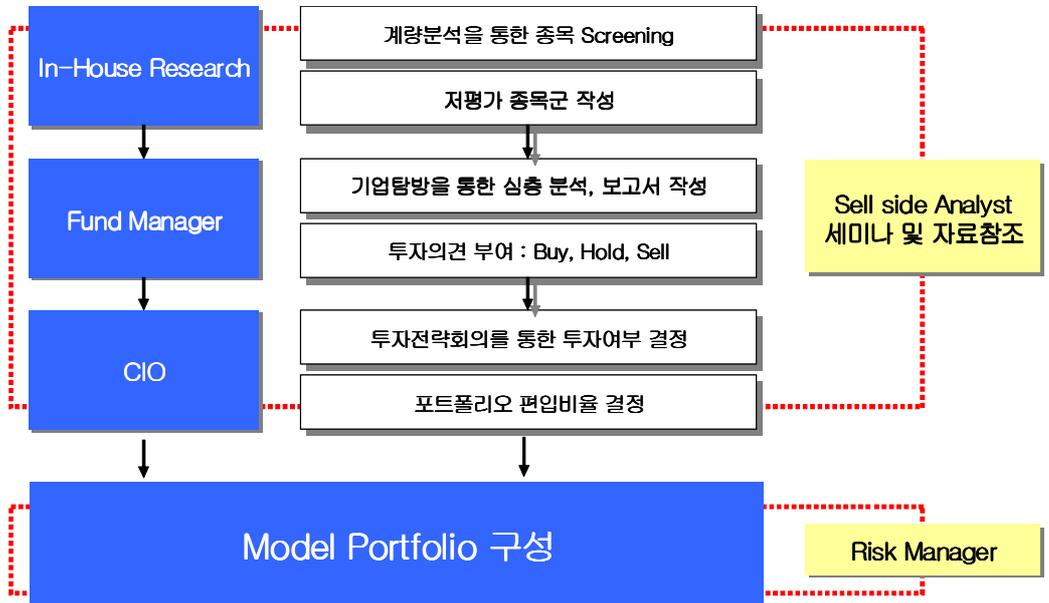
(2) 채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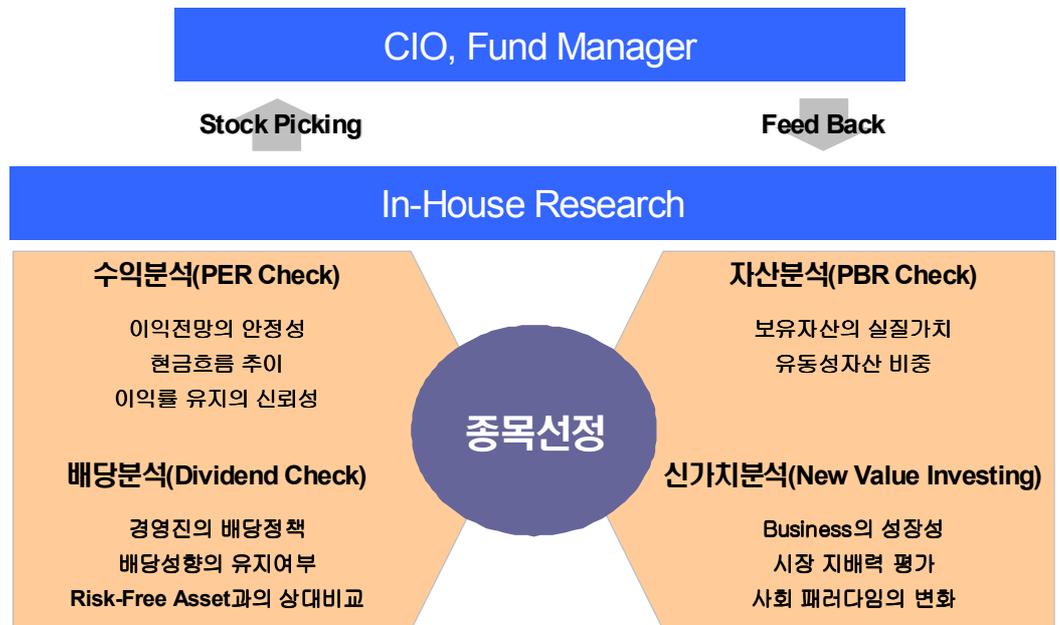
운용프로세스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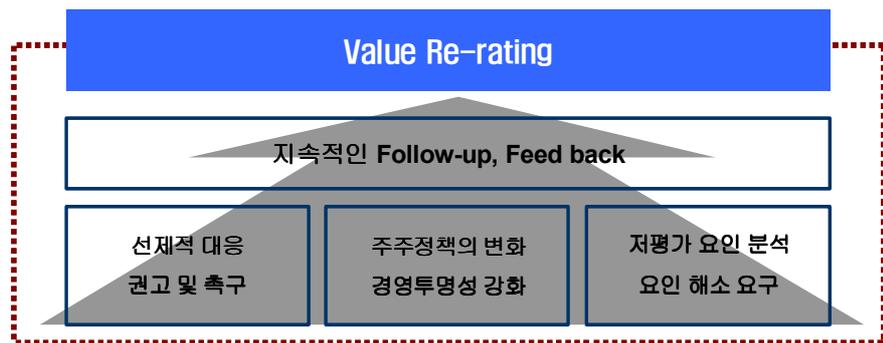


리스크관리

LEVEL	Risk		관리방안
In-House Research	Default Risk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	- 신용등급 재무상황 변동 모니터링
	Value Risk	이익감소, 자산가치 하락 위험	- 투자종목 Valuation 업데이트
Fund Manager	Agency Cost Risk	경영진의 주주이익 침해 위험	- 주주정책 Feed back -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CIO	Portfolio Risk	장기수익률 저조 위험	- Model Portfolio Feed back
준법감시인	Legal Risk	법규, 규정 위반 위험	- 정기/수시 교육 - ‘사전주의리스트’ 작성 및 적용
Risk Manager	Operational Risk	업무처리절차, 시스템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정기/수시 모니터링 실시 -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투자기업과의 Feed Back

- ◆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주주정책 및 경영투명성 개선 유도
- ◆ 투자기업의 저평가 요인 해소를 통한 기업가치 Re-rating 추구
- ◆ 투자기업의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권고 및 촉구



2. 투자 위험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라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투자 대상

* 투자비율은 신탁 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 대상	투자 비율	주요 내용
주식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함.
채권	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수익증권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함.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투자증권의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까지 투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 이하
은행계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금리스왑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 자 제 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 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가능
동일종목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봄.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함. 이하 이 목에서 같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함),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구분	내용
	<p>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함)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파생상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함)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p>후순위채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수익증권투자, 투자증권대여, 파생상품위탁증거금합계,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증권의 차입),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포함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상기 자산의 평가규정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의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 방법

- 중개사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은 2개월에 1회, 채권부문은 3개월에 1회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Tool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 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사를 선정합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유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신탁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포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투자증권 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위와 같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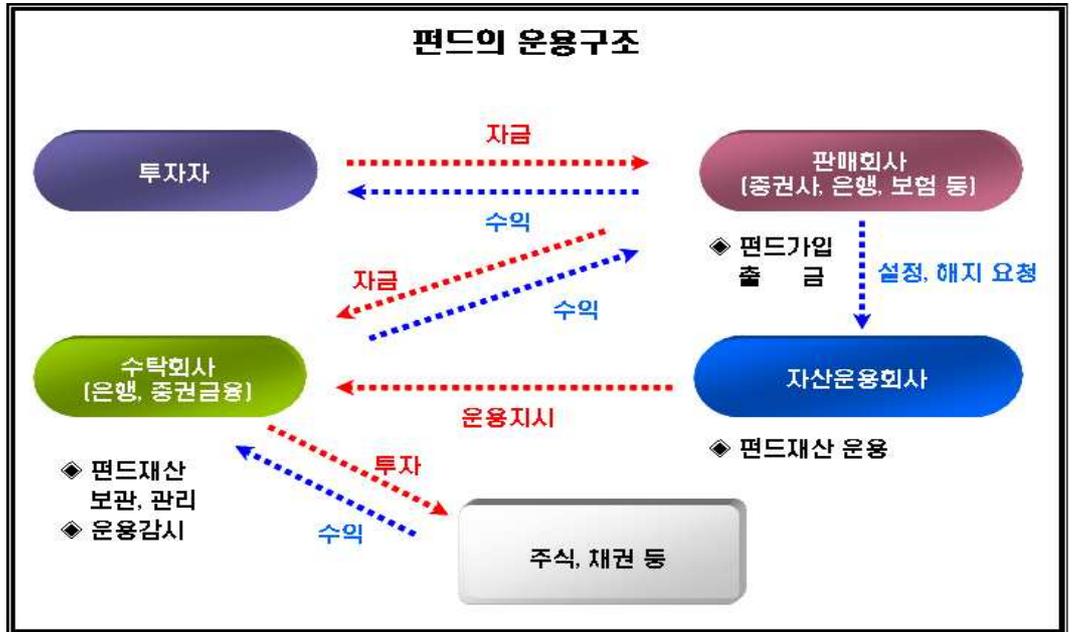
(4)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6000)
회사연혁	2006. 2.13 : 밸류운용(주) 설립 2006. 4.14 :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006. 12 : 한국밸류10년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 2006. 12 :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 2007. 3 :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주식형펀드 출시 2007. 4 : 1000억 이상 성장형 펀드 중 1년 수익률 1위 달성 2007. 6 : 한국밸류 10년투자 퇴직연금채권혼합 펀드 출시 2008. 5 : 한국밸류 10년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 출시 2008. 8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koreavalueasset.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업무를 수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과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
내용

<요약 대차대조표-단위 : 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07.4.1 ~'08.3.31	'06.4.1 ~'07.3.31
현금및예치금	10,094	6,122	영업수익	7,777	2,359
유가증권	528	528	영업비용	4,333	3,495
대출채권	40	40	영업이익	3,444	-1,136
유형자산	229	282	영업외수익	3	0
기타자산	1,227	1,757	영업외비용	1	0
자산총계	12,118	8,729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3,446	-1,136
예수부채	0	19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631	0
차입부채	0	0	계속사업 이익	2,815	-1,136
기타부채	734	141	중단사업 이익	0	0
부채총계	734	160	당기순이익	2,815	-1,136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1,384	-1,431			
자본조정	0	0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자본총계	11,384	8,569			
부채와 자본총계	12,118	8,729			

4. 운용자산 규모

(2008년 8월 4일 기준, 단위: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총계
수탁고	12,657	474	0	0	0	0	0	0	13,130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08.04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이채원	44세	책임 운용역	4	1,285억좌	중앙대 경영학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실장 한국투신운용 (구 동원투신운용) 주식운용부
엄덕기	35세	차장	4	1,285억좌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투자증권 주식운용부 한국투자증권 (구 동원증권) 채권운용팀
최웅필	36세	차장	4	1,285억좌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한국투자증권 주식운용부
김동영	34세	차장	4	1,285억좌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투자증권 주식운용부
배준범	35세	차장	4	1,285억좌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실
이승혁	32세	대리	4	1,285억좌	연세대 대학원 수학과(석사) 한국투자증권주식운용부

※ 신탁재산의 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 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한국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1544-5000, 1588-0012)
	연혁	- 1974.07.16 : 설립 (자본금 5억원) - 2000.06.04 : 종합증권사로 전환 (한국투자신탁증권) - 2005.03.31 : 동원금융지주 계열회사 편입 - 2005.06.01 : 한국투자증권과 동원증권 합병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88-1111)
	연혁	- 1991.7. 은행업무개시 - 1999.1. 보람은행과 합병 - 2002.2. 서울은행과 통합
	홈페이지	http://www.hanabank.com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588-9999)
	연혁	- 2001.11.01 : 설립(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합병)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600-0119)
	연혁	- 1984.04 : 쌍용투자증권 설립 - 1999.05 :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상호 변경 - 2002.08 :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홈페이지	http://www.goodi.com
농협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1588-2100)
	연혁	- 1961.08.15 : 설립
	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p.com
우리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1544-0000)
	연혁	- 2004.05 : LG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 2004.12 : 우리금융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 2005.04 : 우리투자증권 출범
	홈페이지	http://www.wooriwm.com
유진투자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1588-6300)
	연혁	- 1954.05 : 설립 - 2008.01 : “유진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광주은행	주소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1588-3388)
	연혁	- 1968.09 : 회사 창립 - 2001.03 : 우리금융지주(주) 자회사 편입
	홈페이지	http://www.kjbank.com
교보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1544-0900)
	연혁	- 1949.11 : 설립(구 대한증권) - 1994.04 :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키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1544-9100)
	연혁	- 2000.01 : 설립 - 2001.03 : 김봉수 대표이사 선임 - 2004.10 :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신영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1588-8588)
	연혁	- 1956.02 : 신영증권 주식회사 설립 - 2005.05 : 34년 연속 흑자 달성
	홈페이지	http://www.shinyoung.com

구분		내용
동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1588-4200)
	연혁	- 1982.12 : 국민투자금융 설립 - 1988.09 : 동부투자금융(주)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winnet.com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1566-2566)
	연혁	- 1961.08 : 중소기업은행 설립 - 2002.02 : 수익증권 위탁판매업무 실시
	홈페이지	http://www.ibk.co.kr
미래에셋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577-9300)
	연혁	- 1999.12 : 설립 - 2000.01 : 증권영업개시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com
SK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1599-8245)
	연혁	- 1955.07 : 설립
	홈페이지	http://www.priden.com
현대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1588-6611)
	연혁	- 1962.06 : 설립
	홈페이지	http://www.youfirst.co.kr
전북은행	주소 및 연락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1588-4477)
	연혁	- 1969.12 : 설립
	홈페이지	http://www.jbbank.co.kr
대우증권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588-3322)
	연혁	- 1970.09 : 동양증권(주) 설립 - 1983.10 : "대우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bestez.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2. 수익증권 환매
 3. 수익증권 교부업무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5.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6.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판매행위 준칙 등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법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있어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88-1111)
회사연혁	- 1991.7. 은행업무개시 - 1999.1. 보람은행과 합병 - 2002.2. 서울은행과 통합
홈페이지	http://www.hanabank.com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8.08.05 신한아이타스(주)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aitas.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자산운용 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2층 (02-3215-14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15층 (02-739-359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pricing.co.kr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간접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의결사항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및 의결방법

-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 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4) 소집주체 및 통지

-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회사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연기수익자 총회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 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련 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valueasset.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mak.or.kr>)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2) 결산서류 등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상기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간접투자자 및 간접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4)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 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6) 약관변경

- 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함)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7) 정기공시 확인장소

-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1) 공시방법 및 공시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2) 의결권 행사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

	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 (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별첨]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제1부. 투자신탁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6. 수탁고 추이(순자산가치 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08.04	08.02.04	07.08.04	07.02.04	06.08.04	06.02.04	05.08.04
수탁고	11,029	10,454	9,718	3,290	2,402		
증가율*	5.51	7.57	195.39	37.00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II. 투자정보

7. 투자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07.08.05 ~08.08.04	06.08.05 ~08.08.04			06.04.18 ~08.08.04
투자신탁	-15.65	23.89			16.59
비교지수*	-12.80	9.35			4.25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금리] x 0.1)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는 “국고채 3년 지표금리+α”를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였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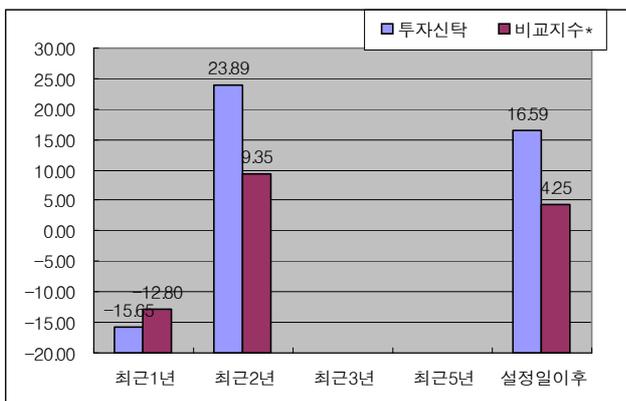
기 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08.05 ~08.08.04	06.08.05 ~07.08.04			
투자신탁 1)	-15.65	81.96			
비교지수 2)	-12.80	37.12			

주1)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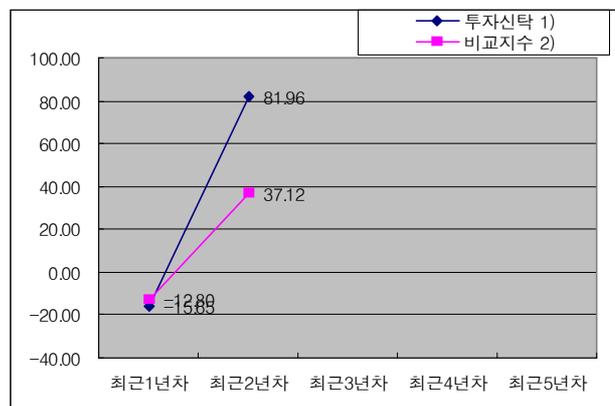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 : ([KOSPI 200] x 0.9) + ([CD금리] x 0.1)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는 “국고채 3년 지표금리+α”를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였음

※ 연평균수익률 그래프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